

# 2023년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상세 안내

## [조성및운영지원(신규)]

### 1.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

- 문화예술 취약지역 내 공공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신규 조성하여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
- 최대 3개년 동안 지원 가능하며, 3개년 지원체계에 맞는 중장기 작은미술관 운영계획 수립
- 공간제공, 리모델링 및 운영비용 등은 지자체 등 공공에서 지원하고 시각예술분야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기획은 전문 기획자가 참여하는 지역 민간단체가 추진
- 사업 선정 후 공간조성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안전을 대비한 공간조성계획 수립(공간 안전 관리 계획 등 선정 시 고려)
- 작은미술관의 확장성과 지역균형관점에서 문화취약지역 및 미선정지역(광역권) 우선 고려

### 2. 지원대상지역(공간)

- 생활권 내에 등록미술관, 대안공간,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또는 이들 시각예술공간이 주민의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
- 미술 공간이 절실한 특수지역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한 지역
  - ※ 공공 유휴공간 : 중앙부처, 지자체(광역자치단체, 기초자치단체) 혹은 공공기관(2023년 기획재정부 지정 347개 공공기관 및 농협, 수협, 축협 중앙회 포함)이 보유한 유휴 공간
  - ※ 민간(개인) 소유 공간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함
  - ※ 지역 문화원, 지역 문예회관, 지역 공공도서관, 생활문화센터 전시실 및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이 이미 조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공 전시공간의 경우, '전시활성화지원' 사업에 지원 가능함

### 3. 지원신청자격

- 대상지 내 공공 유휴공간을 보유·운영하는 중앙부처,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(공간협조 및 예산 등 위탁운영 관련)을 체결한 단체(지역문화재단,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, 사회적기업, 소셜벤처, 협동조합 등)
  - 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
  - ※ 작은미술관 조성비(공간 리모델링) 및 시설 관리 운영비를 위한 지원신청단체 자체 예산 혹은 협약기관의 자체 예산, 보조금의 50% 이상 매칭 필수(선정 후 최대 3년간 매칭 필수)

### 4. 사업기간

- 2023년 4월 ~ 2023년 12월(1차년도)
  - 2차년도 : 2024. 3월 ~ 2024. 11월(예정), 3차년도 : 2025. 3월 ~2025. 11월(예정)

### 5. 지원내용 및 금액

- 선정 후 최대 3개년 동안 지원 가능
  - 단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 - 2~3년차 연속지원여부는 당해년도 사업평가와 연속지원평가회의를 통해 결정

○ 1개소당 최대 6천만원(민간경상보조)

-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음
- 2~3차년도의 경우 연속지원평가를 통해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액 결정

**6. 예산편성 가능 항목**

○ 작은미술관의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

- (지원예산의 최대 30%까지) 전시 프로그램 기획, 운영 및 공간 관리를 위한 인건비(기획자 인건비, 도슨트 사례비 등)
- (지원예산의 70% 이상) 전시 콘텐츠 발굴, 유치, 개최와 교육, 아카이브 등 부대프로그램 추진, 홍보 등을 위한 비용(참여비 및 사례비, 재료비 등)

세목		항목	비고
인건비	기타직보수	-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된 전담인력 인건비 (기획자, 행정인력 등)	총사업비 30% 내 책정 가능
	일용임금	- 사업보조 단기인력 임금	
일반수용비		- 참여비(아티스트피) 및 사례비(기획자, 비평가, 작가, 테크니션, 해설사(도슨트) 등) - 재료비, 제작비, 설치비, 홍보비, 출판인쇄비, 운송비, 회계검사 수수료, 영유아 돌봄비, 배리어프리 환경조성 등 - 예술인고용보험료(사업자부담금), 상해 또는 산재 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	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참여비 (아티스트피) 지급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 회계검증 수수료 필수편성 참여자 전원 상해 또는 산재보험 가입, 예술인고용보험 가입(직장부담금 예산 책정 가능)
임차료		-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비, 대관료	-
공공요금 및 제세		- 우편요금	
국내여비	- 사업 추진관련 교통비 및 숙박비		실비 증빙가능 항목,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, 국외여비는 국내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
국외여비			
사업추진비		- 사업 추진관련 회의진행비, 간담회비	회의진행비 1인당 5천원 미만, 간담회비 1인당 2만원 미만

**7. 예산편성 불가 항목**

- 공간 조성비(공간 리모델링), 자산취득비, 시설 관리 및 단체 운영비, 포괄적 예산(예비비)
- ※ 위 항목은 자체 예산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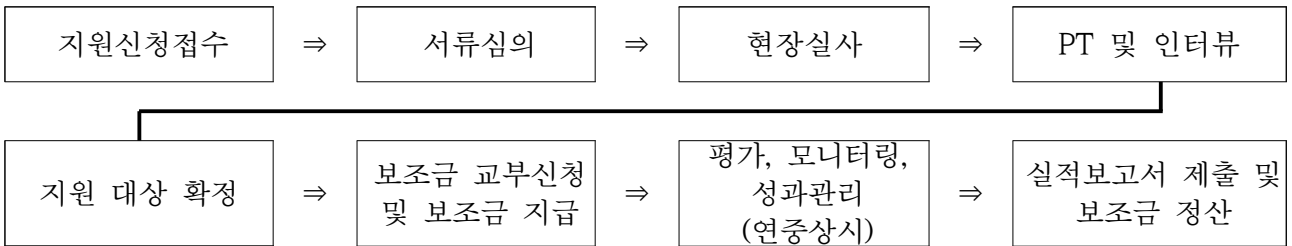
**8. 심의절차**

- ① 서류심사 : 지원신청서(사업계획, 공간설명서,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증빙서) 검토
- ② 현장실사 : 서류심사 통과 대상(최종 선정 예정 건수의 1.5배 이내) 현장실사 및 사업 개선안 자문
- ③ PT 및 인터뷰 심의 : 최종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

### 9. 심의기준

심의기준	세부평가내용
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간의 적합성 (35%)	- 작은미술관 사업추진 방향성과 사업 목표의 일치 여부 - 예산, 추진일정 등 효율성과 예산 매칭 등 실현가능성 - 다중공공시설로의 공간 적합성 · 안전성(화재보험 가입 여부, 안전관리 계획 등) · 개방성, 활용여건, 규모 및 입지 등
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 (35%)	-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, 운영 방안 - 사업추진 파급효과 - 사업의 지속가능성(중장기 로드맵, 지자체 추진의지 등) - 지원 종료 후 자생적인 운영 가능 여부
수행단체의 경력부합성 (30%)	- 유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- 주요 운영/기획 인력의 경력 부합성

### 10. 사업추진절차



### 11. 제출서류 및 내용

제출자료	구분	제출방법
①지원신청서	<b>필수</b>	- 사업계획, 공간설명서, 공간 및 예산 협조 등 협력기관 협력 증빙서,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본문 포함 · 3개년 운영계획 작성 필수 ① 1차년도 : 주민대상 의견수렴, 지역 리서치, 자문회의, 공간 아카이빙, 개관전시 및 프로그램 1회 이상 ② 2차년도 : 전시 2회 이상, 지역 리서치, 자문회의, 공간 및 전시 아카이빙 ③ 3차년도 : 전시 2회 이상, 공간 및 전시 아카이빙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‘첨부파일’ 면에 첨부
②기타참고자료	<b>선택</b>	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제출단계에서 ‘첨부파일’ 면에 첨부

※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공간 협력 증빙서 등 붙임자료는 3차 발표심사 전까지 제출 가능

### 12. 지원불가대상

- ① 민간(개인) 소유 공간이거나 전시공간으로 이미 구성되어있는 공간 및 임시 가설 공간
- ② 지원신청 시점에서 지원대상 공간이 공공 소유가 아닌 경우  
예) 현재는 민간소유이나 공모 선정 시 지자체에서 매입 예정 등은 지원불가

### 13. 선정단체 의무사항

- 지원 신청 시 혹은 사업추진 과정에 전문 기획자를 포함해야 함  
(단체 내부에 전문기획인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인력 활용 가능, 없는 경우 외부 전문 기획자 포함 필수)
- 전시 공간 조성(개보수 포함) 및 시설 운영비 예산은 지원신청단체, 협력 지자체 또는 협력 공공기관의 자체 예산 활용
  - 자체 예산 정산은 ①수행단체 직접 집행 및 정산 후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또는 ②공공(지자체 등) 직접 집행 후 공문 및 집행결과보고서(소정양식) 제출
- 개관 이후 최소 2회 이상의 전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전시장 가동률 50%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(신규-1차년도 제외)
  - ※ 전시장 가동률 :  $\text{전시장가동일} \div \text{사업기간일} \times 100$   
 $= (\text{전시일} + \text{기타행사일}) \div \text{사업기간일} \times 100$   
 $= (\text{사업기간일} - (\text{휴관일} + \text{정비·점검일})) \div \text{사업기간일} \times 100$
- 사업기간 동안 단순 대관전 개최 사양
- 예술인 권리 및 저작권 보호, 표절금지, 고용보험, 사업 수행 안전 확보,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 사업수행단체(참여자) 책임준수
- 향후 공간 사용 불가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취소 가능
- 1, 2차 분할교부 및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점검(중간실적보고서 제출 등) 진행 후 2차 교부 예정
- 사업 수행 중 평가 및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결과가 포함된 연속지원평가를 통해 2~3년차 연속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

### 14. 문의처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담당자(061-900-2342, 2346)
  - 담당자 응대 가능시간 : 10:00~17:00